간호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수진·추미애·조 국

김 현・이성윤・강준현

박지원 · 서미화 · 김 윤

박홍근 • 문진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더해, 건강증진 중심의 보편적 건강 보장과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해 숙련된 간호사 등의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 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포괄적인 간호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 및 의료기관에 근무 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 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함(안 제3조).
- 다.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8조).
- 라.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고, 불법 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마.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 기획·운영·평가 및 교육 총괄 관리, 교육 담당 인력 관리, 교육자원 확보·개발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 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안 제18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의 장기 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필요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가 이행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 카.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 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함(안 제31조 및 제32조).
- 타.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 현장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33조).
- 파.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등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안 제34

간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과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2. "전문간호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3. "간호조무사"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4. "간병인력"이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환자 및 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간호사 등"이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

병인력을 말한다.

- 6. "간호서비스 등"이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 7.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8.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가 필요한 입원환자와 대상자 등에게 간호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간호사 등의 확보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 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

제2장 면허와 자격

- 제5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 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사람
 -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 제6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5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7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9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 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 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 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 사 및 간호조무사가 될 수 없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호사 및 간호조 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9조(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응시자격의 제한) ①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전문간호사・교육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등

-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 전문간호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교육전담간호사) 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이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

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 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 · 운영 · 평가
-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보수교육) ① 간호사는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있다.
 -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 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⑧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설립 허가 등)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⑥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 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

- 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협조의무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 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23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 지,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 2. 제5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 7. 제14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간호정책종합계획 및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제25조(간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을 양성하여 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

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은 제29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 다.
- 제2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간호사 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 2.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간호사 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 3. 간호사 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 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4. 간호사 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 5. 간호사 등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6. 간호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간호사 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 3.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4.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등의 건강 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간호사 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간호사 등의 권리 등

- 제30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에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3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간호서비스 등이 필요한 환자와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 기관, 시설 및 재가 등에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 등의 업무는 간호사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 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간호사 등의 권리) ①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간호사 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 시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 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간호사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은 보건의료 및 간호서비스 등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간호사 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간호사 등을 고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제35조(교대근무 지원) ① 국가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

- 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 체인력을 둘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6조(교육 지원)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의 교육훈련 중인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 제37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 등, 간호사중앙회 또는 간호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8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이나 면 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 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간호사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 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사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 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

- 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 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도회는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시·도 지부로 본다.
- 제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간호인력 취업교육 센터는 이 법 제24조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본다.
-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 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하고,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한의사· 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을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각각 설립"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간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78조 · 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제8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 한다.